

중재인의 공정성 및 독립성

- 2014 국제중재에서의 이해관계 상충에 관한 국제변호사협회 가이드라인과 사례연구 -

조인호*

-
- I. 서 언
 - II. 중재인의 공정성 및 독립성
 - III. 2014 국제중재에서의 이해관계 상충에 관한
국제변호사협회 가이드라인
 - IV. 국내 사례
 - V. 해외 사례
 - VI. 결 론
-

주제어 : 중재인의 공정성 및 독립성, IBA 가이드라인, 이해관계 상충

I. 서 언

최근 국제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국제중재가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선호되고 있다. 국제중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제중재인이 더욱 다양해지고 그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그들

* 대한상사중재원 건설중재팀 과장, E-Mail : joynor@naver.com

의 법적 배경뿐만 아니라 문화적 배경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재인들의 행동 및 윤리를 평가하는 기준, 특히 그 중에서도 분쟁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의 전제조건이라고도 볼 수 있는 ‘중재인의 공정성 및 독립성’도 주목받고 있다. 이에 관한 국제조약이나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국제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 이하 ‘IBA’라고 한다.)가 중재인의 공정성 및 독립성에 관한 실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가장 선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중재인의 공정성 및 독립성에 관한 이론을 검토해본 후, IBA에서 제정한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중재인의 공정성 및 독립성에 관한 실무적인 기준 및 적용 사례를 알아보고, 우리나라와 해외의 관련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중재인, 중재사건 당사자들, 대리인들에게 구체적인 지침과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재인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다룬 국내 선행연구로는 신한동(2011)¹⁾, 오창석(2006)²⁾, 정선주(2007)³⁾ 등이 있고, IBA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다루는 국내선행연구로는 유병욱(2008)⁴⁾이 존재한다. 이를 통하여 중재사건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절차 지연을 사전에 방지하고, 중재판정이 내려진 이후에 중재인의 공정성 및 독립성의 흠결을 이유로 한 중재판정 취소의 제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중재인의 공정성 및 독립성

1. 법관과 중재인의 비교

대체적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중에서도 조정과는 달리 중재는 법원에서의 소송과 동일하게 법적구속력이 있는⁵⁾ 강력한 분쟁해결의 수단임이

- 1) 신한동, “중재인의 고지의무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제21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11, pp. 3~20.
- 2) 오창석, “상사중재에 있어서의 중재인에 대한 기피사유와 중재인의 고지의무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47901 판결을 중심으로 -”, 상사판례연구 제19권 제1호, 한국상사판례학회, 2006, pp. 353~388.
- 3) 정선주, “중재인에 대한 기피”, 중재연구 제17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7, pp. 33~55.
- 4) 유병욱,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인의 신뢰성에 관한 연구 - IBA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 국제상학 제23권 제4호, 한국국제상학회, 2008, pp. 151~169.
- 5) 우리나라 중재법 제35조(중재판정의 효력)는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적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틀림없다. 법적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이외에도 중재는 국제적인 효력, 신속한 분쟁해결 등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중재의 가장 큰 특징이자 법원에서의 소송에 비해 장점인 것은 다름 아닌 중재인을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⁶⁾ 소송에서의 법관에 해당하는 즉, 중재사건에 있어 판정을 통하여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확정 시켜줄 수 있는 중재인을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는 필연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판정을 내려줄 수 있는 중재인을 선호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중재인의 공정성 및 독립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법관의 독립성이 헌법으로 보장⁷⁾되는 것은 단순히 소송당사자의 이익만이 아닌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는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가 관련되어 있는 것에 반해 중재인의 공정성 및 독립성은 주로 편파적인 중재 판정을 회피하려는 당사자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⁸⁾ 또한 중재절차에서 당사자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실정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선과 형평에 맞는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재인은 법관과는 달리 어느 정도 당사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법관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주장⁹⁾도 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중재인의 공정성 및 독립성이 잠재적인 중재이용자인 국민의 중재제도에 대한 신뢰확보에 이바지하는 점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재인의 공정성 및 독립성은 법관의 그것과 비교할 수 있을 가치가 있는 것이다.

2. 관련 규정 및 개념

일반적으로 각국의 국내법과 중재규칙에는 중재인이 공정하고 독립적이어야 하고,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한 모든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 중재법 역시 중재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자신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살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를 지체 없이 중재사건의 당사자들에게 고지하여야 하도록 규정¹⁰⁾하고 있다. 이는 중재사건의 당사자가 필요한 경우에 중재

6) Zvonimir Jelincic, "How to ensure Impartiality of Arbitrators?", 16th International Scientific Conference on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Split, Croatia, 1-2 September 2016, p. 110.

7) 우리나라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관의 독립성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8) 小島武司·猪股孝史, 仲裁法, 日本評論社, 2014, p. 201.

9) 정선주, 진계논문, p. 38.

10) 중재법 제13조 제1항.

인의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법원의 태도¹¹⁾도 중재법 제1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중재인의 고지의무를 강행규정으로 인정한 바 있다. 중재인의 이와 같은 고지의무는 중재인 선정단계 이후 중재절차의 진행 중에도 계속 준수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중재인은 자신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살 만한 사유가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이를 중재 당사자들에게 고지해야 한다.¹²⁾

중재인이 공정하고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국가의 입법례에서 따르고 있는 입장이며, 중재인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이라는 용어는 UNCITRAL 모델법 제12조 제2항이 규정한 *impartiality or independence*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43조¹³⁾ 당사자의 기피권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한 재판’과 그 맥락을 함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용어의 사용으로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공정성은 일반적으로 중재인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개념으로 인하여 편향적이지 않으며 한 당사자에 대하여 다른 당사자에 비해 우호적일 이유가 없는 것을 의미하며, 독립성은 일반적으로 중재인이 해당 중재사건, 그리고 그 결과에 관하여 금전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예컨대 고용관계, 의뢰인 추천과 같이 한 쪽 당사자에게 의존적이지 않으며 가까운 사업상 또는 직무적인 관계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¹⁴⁾

중재인의 공정성 및 독립성에 대하여 이를 나누어 판단하는 견해와 나누는 것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견해가 있다.

첫 번째 견해에 따르면 독립성은 일반적으로 중재인이 과거나 현재에 사건이나 당사자와의 사이에 형성된 관계의 문제이며 그 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범주화할 수 있는 반면, 공정성은 내심의 문제로 본다.¹⁵⁾ 이처럼 독립성은 중재인과 당사자간의 관계에 대한 것이므로 객관적인 기준인 반면, 공정성은 당사자나 사건에 대해 중재인이 취하는 개인적인 성향이나 태도의 문제이므로 주관적이며 외부에

11)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47901.

12) 김갑유 외, 중재실무강의, 박영사, 2016, p. 160.

13)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은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4) Margaret Moses, *The Principles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2n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pp. 135~136.

15) 이와 관련하여 Julian D. M. Lew는 “공정성은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 반면, 독립성은 정의 실현이 보이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라고 표현하였다; 각주의 내용은 Peter Halprin and Stephen Wah, “Ethic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2018 *J. Disp. Resol.*, 2018, p. 89에서 인용.

서는 오로지 중재인의 태도에 의해 알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¹⁶⁾ 또 다른 견해로는, 독립성은 중재인을 주체로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임에 반해 공정성은 중재절차의 진행이나 중재판정의 내용에 관계된 것¹⁷⁾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에 반해 중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개념적으로는 구분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독립성의 판단에도 주관적인 요소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를 명확하게 분리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또한 그러한 분리가 기피사유를 인정하는데 현실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는지는 의문을 나타내는 견해¹⁸⁾도 존재한다.

3. 기타 논의

중재인의 공정성 및 독립성에 관한 또 다른 쟁점으로는 의장중재인과 당사자선정중재인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판정부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한 후 이 두 사람의 중재인이 합의하여 제3의 중재인, 의장중재인을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경우 당사자에 의해 직접 선정된 두 중재인은 각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다룰 것이라는 사실상의 기대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에 이들에게 법관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재인을 선정할 때는 당사자는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을 선호하므로 중재인이 당사자 또는 대리인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일이다. 제3의 중재인, 의장중재인과는 달리 당사자가 그 중재인을 선정하기 이전부터 또는 적어도 중재인에게 의뢰를 위한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와 그 중재인 사이에서 어떠한 접촉이 있었다는 것은 당연히 상정되는 것이라는 점도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다.¹⁹⁾ 심지어 한 조사에 따르면 당사자선정중재인의 경우 자신을 당사자의 대리인처럼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에 관해서 El Koshari 교수와 Karim Youssef는 “당사자들은 일반적으로 독립성에 대한 이중 잣대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상대방이 선정한 중재인에게서는 독립성과 판사와 같은 행동에 관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반면, 자

16) Yves Derains and Eric Schwartz, *A Guide to the New ICC Rules of Arbitra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2005. p. 109(정선주, 전계논문, p. 38에서 재인용).

17) 澤田壽夫, “仲裁人の獨立”, 民事手続法學の革新(上), 有斐閣, 1991, p. 580(小島武司·猪股孝史, 전계서, p. 205에서 재인용).

18) 정선주, 전계논문, p. 39.

19) 小島武司·猪股孝史, 전계서, p. 210.

신들의 중재인으로부터는 편향성을 기대한다.”²⁰⁾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스위스 국제사법에서도 중재인의 독립성만 언급하고 있을 뿐 공정성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는데, 이로부터 당사자에 의해 중재인이 선정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공정성을 언급하지 않고 독립성만 명시하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선정중재인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²¹⁾

그렇다고 하여 당사자가 선정한 중재인에 대해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지극히 확대해석하여도 곤란할 것이다. 당사자선정 중재인에 관해서는 이론상으로도 실무상으로도 의장중재인, 제3중재인과 같은 정도의 엄격한 공정성 및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자선정 중재인이 각자 약간의 편향성을 보일지라도²²⁾ 서로 중화될 수 있고, 그 중재인들이 선정한 의장중재인이 중립성을 가짐으로 인해서 중재판정부 전체가 공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라면 중재인에 대한 공정성 및 독립성이라는 요청은 충족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²³⁾

III. 2014 국제중재에서의 이해관계 상충에 관한 국제변호사협회 가이드라인

1. 국제중재에서의 이해관계 상충에 관한 국제변호사협회 가이드라인

중재인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관한 판단을 위해서 2004년 IBA는 국제중재에서의 이해관계 상충에 관한 국제변호사협회 가이드라인(IBA Guidelines on Conflict of Interest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이하 ‘IBA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제정하였고, 2014년에 개정되었다. 이 가이드라인은 어떠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아니며

20) Ahmed S. El-Kosheri and Karim Youssef, *The Independence of International Arbitrators; An Arbitrator's Perspective*, in *INDEPENDENCE OF ARBITRATORS: 2007 SPECIAL SUPPLEMENT*,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2008, pp. 47~48(Judge Dominique Hascher,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of Arbitrators: 3 Issues.”, *Am U. Int'l L. Rev.*, 2012, p. 796에서 재인용).

21) 정선주, 전제논문, p. 41.

22) 실무적으로는 일방당사자가 선정한 중재인이 과도한 편향성을 보이는 경우, 오히려 그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절차가 진행되거나 판정이 내려지기 보다는 의장중재인이 그 중재인을 의심하거나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23) 같은 취지; 小島武司·猪股孝史, 전제서, p. 210.

준거법이나 당사자들이 따르기로 합의한 규칙에 우월한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닌 글자 그대로 ‘가이드라인’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2004년 제정 이후 이 IBA 가이드라인은 국제중재 커뮤니티에서 광범위하게 수용되었다.²⁴⁾ ICC 국제중재법원(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이나 런던국제중재법원(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이하 ‘LCIA’라고 한다.)과 같은 큰 중재기관들이 이 지침을 정식으로 채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중재인의 독립성 및 공정성에 대한 명시적인 지침을 제공해주고 있으며 중재인의 신뢰성문제를 보완하고 있다.²⁵⁾

2. IBA 가이드라인의 구성과 내용

IBA 가이드라인은 크게 공정성, 독립성, 공개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7가지의 항목 하에 설명하고 있는 제1장과 일반적인 기준의 실무적인 적용인 제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제2장은 국제중재에 있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 중재인의 선임이 이해관계 상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색깔별로 구별하는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중재사건의 당사자 또는 중재인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이 가이드라인에서 상정하고 있는 모습 중 어떤 리스트로 분류될 수 있는지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다. 그 주요한 모습은 아래와 같다.

1) 면제 불가능한 적색 리스트(non-waivable Red List)

첫 번째는 면제 불가능한 적색리스트이다. 이는 ‘누구도 자기 자신에 대한 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배적인 원칙으로부터 파생되는 상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해당할 경우 중재인은 취임 수락을 거절해야 하며 중재인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사임하여야 한다. 즉 중재인이 해당 사유를 공개하거나 중재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중재인은 공정성 및 독립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임하여야 할 것이다.

- 일방 당사자와 중재인이 상호 일치하거나, 또는 중재인이 중재의 일방 당사자의 법인의 법적 대표인 경우
- 중재인이 감독기구의 관리자, 이사 또는 위원이거나, 당사자들 중 어느 일방

24)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 Guidelines on Conflicts of Interest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i, 2014.

25) 유병욱, 전제논문, p. 164.

또는 중재판정에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갖는 단체에 대하여 지배력을 갖고 있는 경우²⁶⁾

- 중재인이 당사자들 중 어느 일방에 대해 또는 사건의 결과에 대해 상당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
- 중재인이 자신을 선정한 당사자 또는 그 계열사에 정기적으로 자문을 제공하며, 중재인 또는 그가 속한 법무법인이 그러한 자문 제공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경우

2) 면제 가능한 적색 리스트(waivable Red List)

면제 가능한 적색 리스트는 상기의 경우보다는 덜 심각하지만, 모든 중재 당사자들, 중재인들 및 중재기관이 해당 중재인의 이해상충 사유를 완전히 인지하고, 모든 중재 당사자들이 해당 중재인 선정에 합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중재인이 중재인으로 선정될 수 있다.

- 중재인이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들 중 어느 일방이나 그 계열사에 법률자문이나 전문가 의견을 제공한 경우
- 중재인이 과거에도 해당 사건에 개입한 적이 있는 경우
- 중재인이 당사자들 중 어느 일방이나 그 개인소유 계열사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중재인의 직계가족이 분쟁의 결과에 대해 상당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
- 중재인이 현재 당사자들 중 어느 일방이나 그 계열사를 대리하거나 또는 그들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
- 중재인이 현재 당사자들 중 어느 일방을 대리하는 법률대리인과 동일한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인 경우
- 중재인이 속한 법무법인이 과거에 해당 사건을 담당하였으나, 현재에는 더 이상 담당하지 않으며, 중재인 본인은 해당 사건에 개입한 바가 없는 경우
- 중재인의 직계가족이 당사자들 중 어느 일방이나 그 계열사에 대해 상당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

26) 면제 불가능한 적색 리스트의 첫 번째 경우와 같이 중재인이 일방 당사자의 법적 대표는 아니지만, 일방 당사자 또는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된 단체에게 상당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나 법적 대표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고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3) 주황색 리스트(Orange List)

주황색 리스트는 중재인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정당한 의심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을 포함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중재인은 해당 상황에 대해서 공개해야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러나 공개하지 않는다고 이것이 자동적으로 중재인 자격박탈이나 중재판정에 관한 취소 사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 중재인이 최근 3년 내에 당사자들 어느 일방이나 그 계열사에 자문을 제공하였거나, 또는 해당 사건과 무관한 사안에서 중재인 선정 당사자나 그 계열사에 자문을 제공하였거나 그들로부터 자문을 제공받았으나, 중재인, 선정당사자, 또는 동 선정 당사자의 계열사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
- 중재인이 최근 3년 내에 해당 사건과 무관한 사안에서 일방 당사자 또는 그 계열사의 상대방 대리인으로 활동한 적이 있는 경우
- 중재인이 최근 3년 내에 당사자들 중 어느 일방이나 그 계열사에 의하여 2회 이상 중재인으로 선임된 적이 있는 경우
- 중재인 및 다른 중재인이 동일한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인 경우
- 중재인이 속한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동일한 당사자, 당사자들 또는 당사자들 중 어느 일방의 계열사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다른 분쟁을 심리하는 중재인인 경우
- 중재인이 최근 3년 내에 전 직원 또는 파트너 지위에서 일방 당사자나 그 계열사와 연관된 적이 있는 경우

4) 녹색 리스트(Green List)

녹색 리스트는 실질적인 이해관계의 상충에 관련된 외관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중재인은 상황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 중재인이 과거에 중재에서도 발생하는 쟁점에 관하여 (논문이나 공개 강의를 통해) 일반적인 의견을 공표한 경우
- 중재인이 속한 법무법인이 과거 중재와 무관한 사안에서 중재의 일방 당사자 또는 그 계열사의 이익에 반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한 경우
- 중재인이 동일한 업무 관련 협회나 사회기관의 회원자격을 통해 다른 중재인이나 일방 당사자의 법률대리인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 중재인이 중재의 일방 당사자 또는 공개상장기업인 그 계열사에 대해 미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IV. 국내 사례

이 장에서는 중재인의 공정성 및 독립성, 이해관계 상충과 관련한 국내 중재판정 및 법원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이 문제가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설비 성능미달 배상금 청구 사건

1) 사실관계

A주식회사(이하 'A사'라고 한다.)와 B주식회사(이하 'B사'라고 한다.) 사이에 공사 계약에 기초하여 설치한 대형 기계설비와 관련하여 성능미달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중재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양 당사자 간에 중재인을 각자 1명씩 선정하고 선정된 중재인들이 의장중재인을 정하기로 하는 이른바 '당사자선정방식'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A사는 중재인 甲을, B사는 중재인 乙을 각각 중재인으로 선정하였고, 甲과 乙은 중재인 丙을 의장중재인으로 선정하는데 합의하여 3인의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었다. 중재판정부 구성 이후, 중재인 乙이 자신의 소속이 법무법인 C로 변경될 예정임을 양 당사자와 대한상사중재원에 고지하였다.²⁷⁾ 이에 대하여 A사 측은 중재인 乙이 소속을 옮기게 될 법무법인 C가 현재 A사가 당사자인 '다른 중재사건에서' A사의 '상대방을 대리'하고 있기 때문에²⁸⁾ 중재인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무국에 중재인 乙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다.

2) 중재판정부의 판단

중재판정부는 '중재인 乙이 그 소속을 법무법인 C로 옮긴 사실 및 법무법인 C가 A사가 수행하고 있는 다른 중재사건에서 상대방을 대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중재인 乙의 중재인으로서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며 A사 측이 신청한 중재인 乙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하였다.

27)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윤리강령 2.2.(v) 중재인이 당사자 일방을 대리하는 변호사와 같은 로펌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인 경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나 명시적으로 이를 적시하지는 아니하였다.

28) 당해 사건에서 A사의 상대방인 B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법무법인 X가 아닌 다른 법무법인이다.

3) 이후 경과

중재법 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중재인에 대한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 기피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해당 중재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후 A사 측은 30일 이내에 법원에 중재인 乙에 대한 기피신청을 재차 하지는 아니하였다.

이 기피신청은 중재판정부에 의해 기각되었지만, 이후 사무국은 이 사건에 앞서 진행 중인 ‘D 주식회사 외 3(B사가 포함되어 있음) 대 E 주식회사’ 간의 중재사건에서 중재인 乙이 B사가 포함된 신청인 측을 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는 중재인으로서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정식으로 중재인 乙에게 통보하였다. 중재인 乙은 ‘D 주식회사 외 3 대 E 주식회사’에서 D 주식회사가 신청인 측을 대표하여 중재사건을 담당하고 있었기에 신청인들 중 B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점을 인정하고, ‘A사 대 B사’ 간의 중재사건의 중재인직에서 스스로 사임하였다.²⁹⁾

4) 평가

중재판정부는 중재인 乙이 B사로부터 당사자선정 중재인으로 지명을 받을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하였다가 이후 그 소속을 법무법인 C로 옮기게 되어 공교롭게도 당해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에서 A사의 상대방을 대리하는 변호사와 같은 로펌 소속이 된 사실만으로는 중재인으로서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중재판정부의 중재인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에 대하여 A사 측이 법원에 재차 기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의 법원의 태도를 알 수는 없다. 중재판정부의 이와 같은 판단은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윤리강령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일 것이지만,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윤리강령에서 2.2.(v)가 규정하고 있는 ‘중재인이 당사자 일방을 대리하는 변호사와 같은 로펌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인 경우’ 중 ‘당사자 일방을 대리하는’이라는 부분을 해석함에 있어 다른 사건에서의 다른 상대방까

29) 이후 B사 측에서는 중재인 乙이 사임함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규칙 제21조 및 동 규칙 제25조에 따라 새로운 중재인을 선정하면서, 의장중재인 丙에 대하여 사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의장중재인 丙은 중재인 甲과 중재인 乙의 합의로 선정된 중재인이기 때문에 중재인 乙이 사임한 후 새롭게 선정된 중재인은 중재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대방 측이 선정한 중재인과 의장중재인에 관한 협의를 하지 못하고, 이에 관해 어떠한 의견제시도 하지 못한 채 중재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지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지는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만일 법무법인 C가 당해 사건에서 당사자인 B사를 대리하고 있었다면 중재인 乙과 B사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같은 로펌의 소속이 되는 것이고, 이는 IBA 가이드라인 중 면제 가능한 적색 목록 2.3.3의 경우에 해당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중재판정의 취소사유가 된다거나 중재인 기피사유가 된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적어도 중재인으로서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관한 정당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외관을 형성하는 결과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중재인이 일방당사자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동일한 법률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기피사유가 되는지에 여부에 관해서 찬반으로 나뉘는 견해와 몇몇의 사례들을 볼 수 있으며 자세한 사례들은 뒤에서 다루기로 한다.

2. 광고사업 대행 계약 분쟁 사건

1) 사실관계

X주식회사(이하 'X사'라고 한다.)와 재단법인Y(이하 'Y사'라고 한다.)는 광고사업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으로부터 대금감액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여 X사는 Y사를 상대로 중재신청을 하였다. 중재판정부는 당사지선정방식으로 X사측은 중재인 丁을, Y사측은 중재인 戊를 각 선정하였고, 의장중재인은 중재인 己로 구성되었다.

중재인 戊는 당시 Y사의 법무실 소속 법률전문위원으로 Y사를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었지만, 이를 별도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대한상사중재원 직원이 구술심리기일 전에 X사측 대리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었으나 중재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X사의 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X사는 중재판정의 일방 당사자의 대리인과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중재인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중재인의 공정성, 독립성을 현저하게 의심하게 할 만한 사유임에도 중재인 戊는 이를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재판정부의 구성이 중재법에 따르지 않은 경우' 또는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2)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게 되었다. 대법원은 중재인 등의 사무국에 대

한 서면 고지가 없는 상태에서 그 직원들이 그 밖의 다른 경위로 알게 된 중재인 등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야기할 사유를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통지받은 사유에 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기피신청을 한 바 없다면, 그 중재인 등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야기할 사유가 예컨대 민사소송법 제41조(제척의 이유)에 정해진 법관의 제척사유와 같이 볼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재판정이 내려진 이후에 뒤늦게 그 중재인 등에게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야기할 사유가 있었다거나 중재법 제13조 제1항에 의한 중재인 등의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중재규칙 제25조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중재법에 정한 중재판정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³⁰⁾ 또한 중재판정의 일방 당사자의 소송대리인과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중재인으로 선정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1조 제4호의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와 같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중재인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야기할 중대한 사유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3) 평가

판례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인 Y사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중재인 戊가 속한 법무법인 구성원으로서의 업무는 이미 중단하고 사건 당시 Y사의 법무실 소속 법률전문위원으로 재직하며, 중재인 戊가 속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아니라 Y사의 직원 신분으로 이 중재사건을 대리했던 것이라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중재판정의 일방 당사자의 소송대리인과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중재인으로 선정된 경우’라고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에 기재된 점은 혼동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재인과 일방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의 과거 이력에 있어 접점이 있는 경우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것이 아닌가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다만 ‘중재인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야기할 중대한 사유’라는 추상적인 표현을 해석함에 있어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들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 중재판정 취소가 인정된 사례

위에서 살펴본 두 사례는 모두 중재인의 공정성 및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야

30)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47901.

기할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없거나,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것들이다. 이에 반해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21995 판결은 중재인의 공정성 및 독립성에 관한 이유로 중재판정을 취소한 사례이다.

이 사례에 따르면 변호사가 중재인으로 선정되어 중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도 변호사로서의 직무상 불특정다수의 고객들에게 상담을 하여 주고 그들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허용된다 할 것이나 중재인으로 선정된 변호사는 중재인의 공정성 및 독립성의 확보를 위하여 그 중재사건의 일방 당사자나 그 대리인과 중재절차 외에서 접촉하는 것은 가급적 제한되어야 하고, 나아가 당해 사건과 무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일방 당사자나 그 대리인의 의뢰로 사건을 수임하는 것 역시 원칙적으로는 허용될 수 없으며, 더구나 그 수임사건이 당해 사건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쟁점을 같이 하는 동종의 사건인 경우에는 그 수임행위는 당해 중재인을 그 중재절차에서 배제시켜야 할 정도로 그 공정성 및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고, 만약 당해 중재인이 배제되지 아니한 채 중재판정이 내려졌다면 이는 구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가 이 법이나 중재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고 판시하였다. 법률상 쟁점을 같이 하는 동종의 사건인 경우 특정인이 한 사건에서는 일방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다른 사건에서는 중재인으로 활동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V. 해외 사례

이 장에서는 중재인의 공정성 및 독립성에 관하여 정당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참고할 수 있기 위하여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1. 일본의 사례

최근 2017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는 중재인의 이해관계 상충 문제, 공정성 및 독립성과 관련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음을 이유로 하는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대한 첫 번째 판결³¹⁾을 내렸다.

해당 중재사건은 일본상사중재협회(The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JCAA)에 2011년에 신청, 오사카를 중재지로 하고 JCAA 중재규칙에 따라 진행된 중재사건으로 신청인들은 에어컨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일본 및 싱가포르 회사이고, 피신청인들은 미국 텍사스에 있는 에어컨을 판매하는 회사이다.

이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3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의장중재인은 세계 여러 나라에 지점을 둔 법률 사무소의 파트너로 싱가포르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2011년에 중재인의 공정성 및 독립성에 정당한 의심을 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선언하였으나, 소속 법률 사무소가 미래에 당사자 또는 관련 회사를 자문하거나 대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2013년 2월에 신청인들의 자회사가 관련된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서의 집단소송에서 신청인들의 자회사를 대리하고 있던 변호사가 해당 법률사무소의 샌프란시스코 사무소에 합류하게 되었고 중재절차의 진행 중 소송도 계속 진행되었다. 의장중재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중재절차 진행 중에 공개하지 않았다.

2014년 8월 중재판정부는 신청인 측에 유리한 판정을 내렸고, 피신청인 측은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일본법에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판정의 내용이 일본의 공서양속에 반한다는 이유로 오사카 지방법원에 중재판정을 취소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신청인들은 의장중재인이 일본중재법 제18조 제4항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모든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오사카 지방법원은 위 사실이 중재인의 공정성 및 독립성에 정당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에 일반적으로는 해당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중재판정의 취소에 이르기까지는 그 정도가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며 피신청인들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제2심인 오사카 고등법원에서는 해당 중재판정을 취소하였다. 오사카 고등법원은 중재인의 의무는 중재인이 상당한 노력을 들이지 않고 발견할 수 있는 이해관계 상충의 잠재적인 요소들을 조사를 할 의무를 포함하고 있으며, 중재인이 해당 법률 사무소에 이해관계 상충 체크를 통해서 별 다른 어려움 없이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에 주목하였다.

하지만 일본 최고재판소는 오사카 고등법원의 결정을 뒤집으며 공정성 및 독립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사실을 공개할 중재인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언급하기 위해서는 중재인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중재인이 중재절차의 완료 전에 합리적인 범위의 조사를 시행한 것에 의해 당해 사실이 통상 판명될 수 있을 것이

31) 平成28(許)43, available at <http://www.courts.go.jp/app/files/hanrei_jp/306/087306_hanrei.pdf> 2018. 4. 30. 22:13 최종방문.

필요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법리 하에 일본 최고재판소는 의장중재인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사건의 기록으로부터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의장중재인이 중재절차의 완료 전에 합리적인 범위의 조사를 통해 당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의장중재인이 속한 법률사무소가 당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그 법률 사무소가 이해관계 상충의 체크를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밝혔다. 따라서 의장중재인이 본 건 사실을 공개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한 원심인 오사카 고등법원의 판단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명확한 법령의 위반이 있다고 하며 원결정을 파기하고 오사카 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중재인의 법률 사무소의 규모나 활동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외형적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경우까지 중재판정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본 최고재판소의 결정은 국제중재의 현실을 잘 반영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기타 국가들의 사례

먼저 앞서 살펴본 일본의 사례와 유사한 기타 국가들의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스위스 연방대법원은 한 스위스 로펌 소속의 중재인이 그 소속 로펌과 제휴하여 활동하고 있는 독일 로펌의 변호사들이 중재사건의 한 당사자의 자회사를 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사건³²⁾에서 ‘그 중재인이 (독일 로펌 변호사들의) 대리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고, 자회사와 관련이 있는 중재사건의 당사자에게 호의적인 모습을 보여줄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스위스 로펌은 수입료를 공유하지 않는 독립적인 법률 사무소의 한 네트워크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재판정을 취소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영국의 고등법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인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기각한 바 있다.³³⁾ 이 사건에서 중재인은 2회의 이해관계 상충의 체크를 하였지만, 중재사건의 한 당사자가 중재인 소속 로펌에 의뢰를 하고 있는 회사의 자회사가 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재판정을 내렸고 이후 중재판정취소의 소가 제기되

32) 스위스 연방대법원 4A_386/2015, *available at* <<http://www.swissarbitrationdecisions.com/sites/default/files/7%20septembre%202016%204A%20386%202015.pdf>> 2018. 4. 30. 22:23 최종방문.

33) 영국 고등법원 *W Limited v. M SDN BHD*, [2016] EWHC 422 (Comm) *available at* <<http://www.bailii.org/ew/cases/EWHC/Comm/2016/422.html>> 2018. 4. 30. 22:31 최종방문.

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경우 비록 IBA 가이드라인의 면제 불가능한 적색 리스트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중재인이 반복하여 공개를 하였으나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았더라면 공개하였을만한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 사건에 있어서 중재인의 공정성 및 독립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1999년 영국의 Queen's Bench Division의 *Aerospace Ltd. v. Laker Airways Inc.* 판결에서는 중재인 중 1인이 일방당사자의 대리인과 같은 법률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것이 문제되었으나, 법원은 중재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을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정으로 안다고 하여도, 설령 잘 안다고 하여도 이 사실만으로는 ‘누구도 자기 사건에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1991년 프랑스의 Court of Appeal도 *KFTCIC(Kuwait Foreign Trading Contract & Investment Co.) v. Icori Estero SpA* 사건에서 중재판정부의 의장중재인이 상대방 당사자의 변호인과 동일한 사무실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기피 신청이 주장되었으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위와 같이 중재인과 동일한 소속의 동료가 동일한 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변호하였거나 또는 현재 다른 사건에서 변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피사유가 인정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며 이 견해에 따르면 소위 명성 있는 법무법인은 기업과 유사한 엄격한 조직을 갖추고 소속변호사들의 내부적 종속성이 강하며, 의뢰인 역시 자신의 담당변호사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전체로부터의 연대감을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³⁴⁾

2011년 프랑스 Court of Appeal of Paris의 *Emvir, Loniewski, Gauthier v. ITM* 사건에서는 의장중재인과 같은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다른 중재인 간의 관계가 문제가 되었다.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한 중재인이 설립한 법률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에 의장중재인이 정기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이 공정성 및 독립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중재인의 의무와 법률 학술지에의 참여는 관계가 없으며, 의장중재인이 그 참여 사실을 당사자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³⁵⁾ 이와 같은 경우는 의장중재인이 사건과는 무관하며 큰 경제적 보상이 수반되지 않아 본인의 직업상 통상적으로 활동가능한 정도의 유형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2011년에 동법원 *Nykool v. Dole France and Agrunord et al.* 사건과 *Tecso v. Neoelectra Group* 사건에서 법원은 중재인의 공정성 및 독립성의 부재를 이유로 중재판정을 취소하였다. *Nykool* 사건에서는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모든 중재인이 그들의 독립성에 관해서 어떠한 언급을 하는 것을 거절하면서 의장중재인은 신청

34) 오창석, 전제논문, p. 369.

35) Judge Dominique Hascher, *op. cit.*, pp. 798~799.

인의 중재인을 의심하는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피신청인 으로부터 선정된 중재인은 피신청인이 당사자인 다른 중재사건에 관여하고 있었다. *Tecso* 사건에서는 피신청인 으로부터 선정된 중재인이 피신청인의 대리인과 1989년부터 2000년까지 같은 로펌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2000년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만 공개하였다는 사실은 중재인의 공정성 및 독립성에 정당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상기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중재인이 일방당사자의 대리인과 동일한 법률사무소에 소속되어 있는 점이 바로 중재판정 취소의 사유나 중재인 기피사유가 되는지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실제 변호사 상호간의 독립성이 어느 정도 유지되느냐 또는 기타 제반 사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요소는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선정방식이 아닌 리스트방식을 따르고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중재인의 독립성이나 공정성에 정당한 의심을 조금이라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외관을 형성하지 않기 위해서 일방당사자의 대리인과 동일한 소속의 중재인들은 중재인 후보자 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

VI.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재인의 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하기 위하여 전 세계 중재 커뮤니티에서는 여러 노력들을 기울여왔으며, IBA에서도 IBA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또 2014년에는 근래의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을 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많은 시도가 있어왔다. 특히 최근 국제중재가 각광을 받으며 이와 같은 움직임들은 더욱 심도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2016년 5월 중재인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³⁶⁾ 특히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중재인과 중재사건의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곳에서는 더욱 이러한 기준을 개관적으로 확립해둘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³⁷⁾ 이 중재인 윤리강령

36)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 윤리강령 본문은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available at* <http://www.kcab.or.kr/jsp/comm_jsp/BasicDownload.jsp?FilePath=t_medshare_m/f_0.166087483289528831463120693235&orgName=%C1%DF%C0%E7%C0%CE+%C0%B1%B8%AE%B0%AD%B7%C9%282016%29.pdf> (2018. 5. 24. 최종방문).

37) 같은 취지로 장승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윤리강령”, 중재 제344호, 대한상사중재원, 2015, p. 28.

은 앞에서 살펴본 IBA 가이드라인 등 국제적인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중재인의 고지의무발생 기준을 ‘당사자의 입장’을 기준으로³⁸⁾ 정하는 등 보다 엄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우리나라 중재제도의 발전에 한 층 더 기여하고 있다.

중재인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하여 중재기관에서는 강화된 윤리 기준을 적용하고 중재인에게 명확하게 고지할 강한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의무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주관적이고 내심의 영역으로 보이는 공정성에 관한 외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재판정서 작성 시, 특히 반대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이유를 자세하게 작성하는 관행이 자리 잡는다면 설령 중재인이 편향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이를 쉽게 외부에 드러낼 수 없는 시스템 구축의 한 모습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중재인의 공정성 및 독립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중재제도를 이용하는 당사자, 법률 대리인, 중재인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기준들과 사례들을 잘 숙지하여 중재인의 공정성 및 독립성에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하여 중재절차가 진행됨에 있어 불필요한 지연 내지 중재판정 이후 취소가 되지 않도록 할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8)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윤리강령 3.1.

참 고 문 헌

- 김갑유 외, *중재실무강의*, 박영사, 2016.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윤리강령*, 2016.
- 오창석, “상사중재에 있어서의 중재인에 대한 기피사유와 중재인의 고지의무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47901 판결을 중심으로 -”, *상사판례연구* 제19권 제1호, 한국상사판례학회, 2006.
- 유병욱,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인의 신뢰성에 관한 연구 - IBA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 *국제상학* 제23권 제4호, 한국국제상학회, 2008.
- 장승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윤리강령”, *중재* 제344호, 대한상사중재원, 2015.
- 정선주, “중재인에 대한 기피”, *중재연구* 제17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7.
- Ahmed S. El-Kosheri and Karim Youssef, *The Independence of International Arbitrators: An Arbitrator's Perspective, in INDEPENDENCE OF ARBITRATORS: 2007 SPECIAL SUPPLEMENT*,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2008.
-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 Guidelines on Conflicts of Interest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2014.
- Judge Dominique Hascher,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of Arbitrators: 3 Issues.”, *Am U. Int'l L. Rev.*, 2012.
- Margaret Moses, *The Principles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2n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 Peter Halprin and Stephen Wah, “Ethic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2018 J. Disp. Resol.*, 2018.
- Yves Derains and Eric Schwartz, *A Guide to the New ICC Rules of Arbitra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2005.
- Zvonimir Jelinic, “How to ensure Impartiality of Arbitrators?”, 16th International Scientific Conference on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Split, Croatia, 1-2 September 2016.
- 小島武司·猪股孝史, *仲裁法*, 日本評論社, 2014.
- 澤田壽夫, “仲裁人の獨立”, *民事手続法學の革新(上)*, 有斐閣, 1991.

ABSTRACT

Impartiality and Independence of Arbitrators – IBA Guidelines on Conflict of Interest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2014 and Case Study –

Inho JOE

As International arbitration has increased in popularity, there has been an expansion in the pool of arbitrators, and a commensurate diversification of not only the legal backgrounds but cultural backgrounds among them and among parties. As a result, there has been increased attention on the standards used to evaluate arbitrators' conduct and ethics, especially among them, 'Impartiality and Independence of Arbitrator' which is a precondition for an acceptable awards. There is no international treaty or code governing these issues. But 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IBA) seems to be leading the way such as establishing practical guidelines regarding to impartiality and independence of arbitrator.

This article will review some theories, cases about impartiality and independence of arbitrator, and practical standards through the IBA guidelines. It is intended to provide specific guidance and criteria to the arbitrators, parties and counsels. And also it is expected to prevent unnecessary delays in arbitration proceedings in advance and filing for the annulment of arbitral awards because of lack of impartiality and independence of arbitrator as well.

Keywords : Impartiality and Independence of Arbitrator, IBA Guidelines on Conflict of Interest, Ethics for Arbitrators